

2015 연구개발 성과정보 입력안내

I

성과정보 입력의 중요성

□ 연구자의 실적평가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중간·최종·추적평가 시 연구자가 창출한 실적은 연구개발결과활용 보고서를 통해 입력하여 검증받은 성과만을 인정

□ 농식품 R&D 사업확대 및 부처별 R&D 성과비교의 근거 자료

- 연구자들이 입력한 성과정보를 토대로 미래부가 각 부처별 R&D 실적을 평가, 관련 R&D 사업예산의 확대·축소 등을 결정

<성과정보 입력 관련 주요 경과>

- 2000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에 따른 각 부처별 R&D 사업의 성과정보입력 본격화
 - 2013년 : 농식품 성과정보 입력대상을 종료과제에서 계속과제로 확대
 - 2014년 :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 발표(미래부, 11월)
 - 2015년 : 성과정보 수시입력이 활성화되도록 입력 시스템 수정·보완
 - ※ 성과 인물정보, 기술실시정보, 부처별 기여율 등 성과정보 항목 보완
- 연구자의 성과정보 입력완료 ('15.12.31) 조기 추진

- (입력주체) 2010~2015년도에 종료되었거나(중단 및 해약 포함)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 세부·협동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도 주관연구책임자가 총괄 입력
- (입력내용) 농식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도에 창출한
성과정보를 입력(2015.1.1.~2015.12.31.까지 발생한 성과)
- ※ 논문,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품종 등), 기술실시, 사업화, 각종 인증실적 등
- (입력절차) 농식품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FRIS)에 접속하여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
- ※ 세부항목별 작성 기준은 '부록. 세부 항목별 기재 지침' 참고

www.fris.go.kr 접속 → 로그인 → 과제관리로 이동하기 → 성과관리 →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 → 종료 / 진행 / 계속 과제 선택 → 항목별 연구 성과
입력 → 등록버튼 클릭

- (입력기한) 2015. 12. 22.(화) ~ 2015. 12. 31.(목)
- (중요사항)
- 성과입력 완료 후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 하단부에 존재하는
- 최종 제출 버튼 클릭 필수
- 성과정보 입력 대상자가 성과정보 미제출시 '16년 3월부터 1년간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감점 3점 조치 예정
- 당해연도 성과창출이 없는 연구자도 최종 제출 버튼 클릭 필수
- 입력 성과는 해당 수행과제를 통해 산출된 성과물이어야 하며, 타
부처 지원을 받은 과제와 공동성과인 경우, 본 과제의 성과창출의
기여정도에 따라 부처기여율을 표기하여야 함

Ⅲ

성과입력 주요 항목

- 논문, 산업재산권, 기술실시 및 사업화는 필수로 입력하고, 생명자원 등 사업특성에 따라 발생 성과 존재시 입력

표 1. 주요 성과항목

구분	항목	주요 내용	목적
필수 항목	논문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성과 입력, 여러 부처의 공동지원을 받았을 경우, '부처기여율' 표시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기여율 조정 효율화
	기술 실시	·농식품 R&D 성과(노하우, 특허 등)를 통해 기술실시를 한 경우 연구자가 직접 정보 입력토록 항목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에서 사업화 관련 성과의 중요성 강조
	사업화	·기술실시계약 체결 여부를 Y/N 중 하나로 선택 ·사업화의 유형을 6개로 구분(기술보유자의 직접 창업·직접 상품화·공정개선,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기술이전 받은 업체에서의 상품화·공정개선)	
	산업 재산권	·특허 이외의 산업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 품종)의 성과를 구분하여 입력 ·부처 간 기여율 정보를 입력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기여율 조정 효율화
선택 항목	생명 자원	·생명자원(미생물자원, 동물자원, 식물자원, 유전자원 등)과 생명정보(유전체/발현체 등) 관련 성과입력	농생명 사업의 성과지표, 사업별 특성화 지표로 해당과제의 우수성을 나타냄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성과입력	
	인증	·신기술, 녹색, 건강기능식품, 농기계 및 농자재인증 등 인증을 받은 성과를 입력	
	동물용 의약품 개발	·백신과 동물용의약품의 신약 개발단계 (후보물질확보 →야외임상시험허가→품목허가)의 성과를 기입	'가축질병대응사업'의 성과지표로 강화

□ 기존대비 변경사항

-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에 연구책임자 정보 외 실무자 정보 입력 필수
- 기술실시 정보를 연구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
- 사업화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세분화
- 인증 관련 항목(수출관련·신기술·녹색, 농기계 및 농자재·건강기능식품개별인정, 기타)들을 통합

□ FRIS 관련

Q1. 성과입력과 증빙자료 업로드 후 등록 버튼을 눌렀는데 성과등록이 안됩니다.

A1. 성과입력 시, 증빙자료는 PDF 또는 HWP 형태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빙자료에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록이 불가하오니,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Q2. FRIS에 접속 후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종료과제(또는 진행과제)에 과제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A2. 주관연구책임자의 ID/PW로 로그인하셔야 과제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연구책임자께서는 주관연구기관으로 발생 성과를 송부하시고 주관연구책임자께서는 세부성과를 모두 취합하신 후에 성과입력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의 인쇄가 안 됩니다.

A3.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 등록 화면 하단의 '인쇄 문서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을 경우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설치해 주십시오' 클릭 후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 논문

Q1. 해당년도의 게재 여부는 정확히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A1. 실제 논문이 책자로 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Received, Accepted, On-Line Published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권(호) 및 페이지 정보를 가지는 Off-Line Published만 인정됩니다. 단, SCI(E) 학술지 중 일부 저널은 On-Line 출판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만 On-Line Published 날짜가 인정됩니다.

Q2. 논문 증빙자료 제출 시 특정한 양식이 있나요?

A2. 논문 증빙자료의 경우 특정한 양식은 없으나, 해당논문이 해당 저널에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Off-Line 출판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문에 학술지명, ISSN/ISBN, 발행년월일, 페이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

Q1. 개인명의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A1. 국가R&D로부터 창출되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과제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명의 소유가 가능합니다. 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성과로 인정됩니다.

- 출원(등록)기관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제출)
- 연구개발 소유기관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연구개발 소유기관의 공문 제출)

□ 인력양성

Q1. 인력양성 성과 입력 시 어떤 성과를 입력해야 하나요?

A1. 학위취득자 배출기준이 아닌 학위과정 및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 지원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박사(연구교수, Post Doc. 등), 석사(박사학위 과정생 포함), 학사(석사학위 과정생 포함), 기타로 구분합니다.

□ 문의처

- 배현정 연구원(02-726-1154, 연구용역 수행기관 직원)
- IPET 성과관리실 031-420-6774~5

부록. 세부 항목별 기재 지침

□ 논문

○ SCI 논문 실적의 경우 KISTI와의 DB연동으로 검증을 통해 검색된 성과 입력

- 검증이 안 되는 경우, 논문명 직접 입력

○ 항목 설명

- 논문명 : 해당 논문의 제목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게 기재

- 저자명 : 주저자(논문의 제1저자), 공저자, 교신(책임) 저자로 구분하여
1행에 1인씩 입력(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행을 새로 추가하여 입력)

※ 특히 SCI 논문의 경우, 해당 학술지에 실린 영문 저자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지에 한글명으로 등재된 경우 동일하게 한글명으로 기재

- 학술지명 :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을 약자가 아닌 정식명칭(full name)
으로 기재 (예시)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 볼륨번호 :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Volume(Number) 기재
(예시. 114(4)), volume 또는 number가 없을 때는 0으로 기재)

- ISSN/ISBN :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ISSN 또는 ISBN 번호를 기재
(예시. ISSN 입력 시 : 1254-3284, ISBN 입력 시 : 978-89-5533-263-6, 정확한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ISSN이 없는 학술지의 경우 0000-0000 입력)

- SCI(SCIE) : 학술지의 SCI(SCIE 포함) 등재 여부 기재

- 부처 기여율 : 타부처 지원을 받은 과제와 공동성과인 경우, 본 과제의
성과창출 기여정도에 따라 기여율 작성

- 증빙자료 : 논문 PDF 파일 업로드

□ 특허 / 산업재산권

○ 특허 출원·등록 및 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 성과를 입력하며, 특허청과의 DB연동으로 검증된 성과를 입력

- 검증에 실패한 특허나, 품종보호 등의 산업재산권은 검색창 상단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직접 입력
- PCT 해외출원은 국외 특허청과 DB 연동이 불가능하므로, 특허명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

○ 항목 설명

- 성과발생년도 : 해당 특허의 출원 혹은 등록년도를 입력
- 산업재산권 종류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구분하여 선택
- 발명(고안, 디자인)의 명칭 : 해당 특허의 출원(또는 등록)한 정식 명칭으로 기재
- 출원(등록) 인물정보 : 인물 또는 기관, 출원인(등록인)/발명인 구분하고 출원(등록)인이 다수인 경우 행을 추가하여 1행에 1인씩 기록, 기관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된 정부 R&D 특허성과는 부적법한 특허성과에 해당.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성과로 인정됨

* 출원(등록)기관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 등록증 제출) 등

** 연구기관이 아닌 개인의 명의(연구자 또는 제 3자)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로서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는 특허청을 통하여 명의변경 신청 후 전문기관에게 보고해야함

- 출원·등록번호 : 국내 특허의 출원(또는 등록) 번호를 공백없이 ‘-’를 포함하여 15자로 기재(이미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도 별개의 성과로 추가 입력할 것)

(예시 : 특허출원 번호 입력 : 10-2010-0000001, 특허등록 번호 입력 : 10-0000001-0000)

※ PCT 해외출원은 ‘PCT/KR2010/ * * * * *’ 형태로 17자로 기재

※ 해외 특허의 출원(또는 등록)번호 기재시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독일, 영국,

캐나다, 대만은 각국의 번호 체계대로 반드시 입력

- 출원등록구분 : 출원/등록을 구분
- 공개희망여부 : 출원 시 공개를 희망하지 않은 지재권과 출원 후 18개월 미만으로 미공개 상태인 특허는 출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 기술가치평가 :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특허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한 경우 평가 결과 입력
- 증빙자료 : 해당 특허청에서 발행한 출원사실증명원, 특허등록증 등
- 부처 기여율 : 타부처 지원을 받은 과제와 공동성과인 경우, 본 과제의 성과창출 기여정도에 따라 기여율 작성

□ 기술실시

○ 농식품 R&D 성과를 자체실시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여 실시하는 경우 기술명, 실시기관, 기술실시유형 등에 관한 내용 작성

○ 항목 설명

- 기술실시 계약명 :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으로 기술료와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이름
- 기술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독점적 통상실시권/양도/직접 실시에서 선택
- 유·무상 여부 : 기술보유기관에서 실시 후 기술료를 받았거나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한 경우는 유상을 선택,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감면 받은 경우는 무상을 선택
- 기술실시 형태 구분 : 비영리법인 직접 실시/비영리법인 제3자 실시/영리법인 직접 실시/영리법인 제3자 실시/기타에서 선택
- 최초 기술실시 계약년도 : 계약년도 작성
- 기술료 계약체결일 : 기술실시 계약년도와 구별하여 기술료를 최초로 납부한 일자를 작성

- 기술료 구분 : 기술보유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 1) 비영리법인/영리법인 중에서 선택
 - 2) 기술료(기술이전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구분 : 기술보유자의 기술료 수입이 있을 경우 기술이전 기술료를 선택하고, 농기평에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를 선택. 영리법인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필수로 입력하고, 기술이전기술료는 수입이 있을 경우에 기술료 구분2)에서 입력
 - 3) 기술료 유형(정액/경상/혼합) 구분 :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 정액, 기업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우 경상을 선택, 정액+경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혼합을 선택
 - 4) 기술료 : 기 정수 기술료와 당해년도 기술료(원)로 구분하여 기입
- 기술실시 내용 : 기술보유자가 실시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
- 기술실시 대상기관 : 기술이전 받은 기관명을 기입, 자체실시일 경우 기술소유기관 명을 입력
- 기술실시 대상기관 사업자등록번호 : 기술이전 받은 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공백없이 (-)를 포함하여 기재
 - * 예: 123-45-67890
- 기술실시 대상국가 : 국내인 경우 대한민국, 국외인 경우 국가명을 선택
- 증빙서류 : 기술실시 계약서 첨부

사업화

○ 기술거래 성과가 있는 과제의 경우 사업화 현황 입력은 필수대상임

※ 사업화 현황(매출액, 비용절감 등)은 주관연구책임자가 기술실시기업과 협의하여 입력

○ 항목 설명

- 사업화명 : 사업화명 기재
- 사업화년도 : 연구개발과제의 개발결과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사업화를 시작한 년도

- 성과발생년도 : 경제적 이윤(매출, 비용절감 등)을 창출한 당해 연도를 기재
 - 사업화 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개발결과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대한 설명
 - 제품명 : 상품화한 제품의 이름 기재. 출시된 제품이 여러 개인 경우 ‘,(상품명)’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 바람. 제품과 관련한 정보(제품사진, 제품출시일, 매출액 등)는 사업화 증빙자료인 사업화 실적확인서에 상세기재 요망
 - 업체명 : 사업화 업체명을 정식명칭으로 기재
 - 제품용도 : 사업화된 제품이 사용되는 용도를 기재
 - 사업화 여부 : 사업화 예정은 시제품 제작, 매출 발생전일 경우 선택하고, 사업화 완료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정개선에 적용되는 경우에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화 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공백없이 (-)를 포함하여 기재
 - 대표자명: 사업화 업체의 대표자명을 한글로 기재(외국인인 경우 영어로 기재)
 - 사업화 형태 : 해당되는 사업화 형태에 따라 6유형에서 선택
- * 기술보유자의 직접 창업, 기술보유자의 직접 상품화, 기술보유자의 공정개선,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기술이전 받은 업체에서의 상품화, 기술이전 받은 업체에서의 공정개선 등으로 구분
- 공정개선 내용 : 사업화를 통해서 개선된 내용을 기록(매출액 상승 등 포함)
 - 고용창출인원수 : 2015년도에 신규로 고용이 창출된 인원수를 기재
 - 기매출액(원) : 해당과제의 연구성과로 사업화하여 신규로 발생한 2014년까지의 기매출액을 원 단위로 기재
- ※ 사업화 이후 신규 발생 매출액의 경우, 기매출액에 ‘0’ 기입
- 당해년도 매출액 : 해당과제의 연구성과로 사업화하여 신규로 발생한 2015년도

매출액을 원 단위로 기재

- 증빙자료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과제 사업화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

※ 사업화실적확인서(붙임1)는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 성과등록 페이지에서 다운가능

□ 사업별 특성화된 성과

- 생명자원(정보) : 농생명기술개발사업, 포스트게놈유전체 사업은 입력 필수

- 입력항목 : 생명자원(생명정보)명, 등록·기탁번호, 등록·기탁기관, 생명자원/생명정보유형, 등록일, 증빙자료, 부처기여율

* 생명자원 유형 : 미생물자원, 동물자원, 식물자원, 유전자원, 기타

** 생명정보 유형 : 유전체정보, 발현체정보, 기타

- 증빙자료 : 생명정보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한 등록확인서 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발급한 기탁증명서

○ 인증

- 신기술, 녹색인증 : 농식품 R&D 지원을 받아 산출된 결과물이 신기술이나 녹색인증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성과로 입력할 것

- 건강기능식품개별인정(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은 입력 필수) : 기능성원료·성분을 그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 받은 경우 해당 성과로 입력, 식품기능성표시/원료/지표물질 입력, 식약처 개별인정서 첨부

- 농기계 및 농자재인증(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은 입력 필수) : 농기계 및 농자재 인증 내용 입력하고 증빙자료 첨부

- 입력항목 : 인증유형, 인증명, 인증기관, 인증일, 인증내용, 인증기관, 증빙자료, 부처기여율

○ 수출실적(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은 입력 필수)

- 해당 총수출계약 및 수출관련인증 내용 입력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각각 첨부할 것(증빙자료 예시: 수출실적증명서, 중국SFDA)

○ 백신 및 동물용 의약품 개발 (가축질병대응사업은 입력 필수)

-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백신, 동물용 의약품 개발의 단계별(후보물질 확보→ 야외임상시험 허가→ 품목허가) 승인 성과를 입력

* 품목 허가된 경우 후보물질 확보, 임상시험 허가내용을 모두 입력

□ 그 외 성과입력

○ 소프트웨어

- 입력항목 : 저작권명, 저작자명, 등록국가, 등록기간, 등록번호, 등록기관, 증빙자료, 부처기여율
- 증빙자료 : 소프트웨어자산뱅크에서 발급한 등록확인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한 저작권등록증

○ 민간연구지원조직(CRO, CMO)육성

- 농림수산물식품 산업의 민간 RnD 기반구축 및 투자활성화 촉진을 위해 RnD 서비스(CRO) 및 생산 기술·시설 서비스(CMO)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지원조직의 육성, 지원을 한 경우 해당 성과로 입력할 것

○ 교육 및 컨설팅

- 연구관련 내용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행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 작성

○ 정책활용

- 농정시책 반영 및 정책 건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작성 요망

○ 타 연구에 활용 및 2단계 연구에 활용

- 본 연구를 바탕으로 타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 작성 요망

○ 기타활용(단행본 발간, CD제작 등)

- 연구활용을 위해 단행본이나 CD 등을 제작한 경우 작성 요망

○ 연구인력 양성 및 취업

- 인력양성내용 : 인력양성과 관련된 이행내용을 기재
- 본 연구를 통해 인력(박사, 석사, 학사 등)을 양성 또는 취업성과가 발생한

경우 작성, 증빙서류로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서, 재직증명서 등 첨부

○ 학술대회

- 연구과제내용에 대해 학술대회를 발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내용 작성, 증빙자료는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첨부

○ 홍보실적(신문, 방송, 저널 등)

- 매체를 통해 해당 연구 내용을 홍보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 기재, 증빙 자료는 홍보내용 사진 등을 첨부

○ 전시회 참가(전시회, 박람회, 제품설명회 등)

- 연구과제내용과 관련하여 전시회, 박람회 및 제품설명회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 증빙자료는 전시회 브로셔 혹은 행사 참여 사진 등을 첨부

○ 수상실적

-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수상 또는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기재하고 증빙자료로 상장 등을 첨부

○ 국제화/협력 성과

-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기술협력(외국 연구자를 유치 혹은 해외파견을 한 경우) 및 MOU를 체결 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 기재. 증빙자료로는 관련 사진 혹은 협약 증명서 첨부